

# 윌테크놀러지 행동규범

(Willtechnology Code of Conduct)

Version 1.0

# 윌테크놀러지 행동규범 (Willtechnology Code of Conduct)

윌테크놀러지(이하 "회사")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윤리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사회 및 환경적 책임과 윤리 강령을 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본 행동규범은 회사의 모든 임직원에게 일관되고 공통적으로 적용되며, 회사에 서비스나 제조 및 조립 상품을 공급하는 모든 협력업체에게도 준수되어야 하는 행동규범입니다.

행동규범은 크게 노동인권(Labor & Human Rights), 안전 보건(Health & Safety), 환경(Environment), 윤리(Ethics), 경영시스템(Management System)의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다음과 같이 항목별 표준을 정의합니다.

## I . 노동 인권(Labor & Human Rights)

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공정하고 윤리적인 작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근로자는 최고의 존엄과 존중으로 처우되어야 하고, 회사의 모든 협력업체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.

### 1. 차별 대우금지

- ① 회사는 신규 채용 및 기타 고용 업무시 연령, 장애, 민족, 성별, 결혼 여부, 국적, 정치적 편향, 인종, 종교, 성적 지향성 또는 노조 가입 등을 근거로 근로자를 차별 해서는 안된다.
- ② 회사는 해당 법률이나 규정에 의거하거나, 작업장 안전성에 대한 분별력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또는 잠재적 근로자의 의료 검진을 요구할 수 없으며, 검진 결과를 근거로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.

### 2. 가혹 행위 금지

회사는 작업장의 가혹 행위 근절에 앞장선다. 회사는 언어 학대 및 폭력, 정신적 폭력, 정신 및 신체적 강요, 성희롱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로 근로자를 위협 또는 복종시켜서는 안된다.

### 3. 비자발적 노동 금지와 인신매매 방지

- ① 회사는 모든 근로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. 또한 개인을 사고파는 행위나 노예 노동, 강제 노동, 담보 노동, 계약 노동 또는 수형자 노동을 이용할 수 없다. 비자발적 노동이란 위협, 강제, 강요, 유괴 및 사기를 비롯해 노동 착취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는 개인에게 비용을 지불하는 등의 수단으로 사람들을 운송, 은닉, 채용, 이전, 수용 또는 고용하는 행위를 말한다.
- ② 회사는 고용 조건으로 정부에서 발행한 근로자 신분증이나 여행 서류,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거나 소지해서는 안된다.
- ③ 회사는 근로자와의 계약서 작성시,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고용 조건을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한다.
- ④ 회사는 근로자의 작업 장 내 이동이나 회사 시설 출입에 대해 부당한 제약 조건을 강요해서는 안된다.
- ⑤ 회사가 제3의 고용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고용 기관 역시 본 수칙과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. 회사가 직접 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외국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근로자의 한달 예상 실질 임금을 초과하는 모든 비용과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.

### 4. 제3의 고용기관

회사가 제3의 고용 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고용 기관 역시 본 수칙과 조항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.

### 5. 미성년자 노동 금지

회사는 법정 최소 고용 연령의 근로자만 고용할 수 있으며, ILO 최저 연령협약 138호 6조에 따른 교육 목적의 합법적인 작업장 견습 프로그램이나 ILO 최저연령협약 138호 7조에 따른 가벼운 노동은 제공할 수 있다.

### 6. 청소년 근로자 보호

회사는 ILO 최저연령협약 138호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건강, 안전, 심리를 해칠 가능성이 없다는 전제하에 법정 최소 고용 연령보다는 많지만 18세보다 어린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다. 하지만 청소년 근로자에게 시간외 근무나 야근을 요구할 수는 없다.

## 7. 학생 근로자 보호

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학생 기록물의 적절한 유지, 교육 파트너의 상당한 주의 및 학생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 근로자를 올바로 관리해야 한다. 또한 모든 학생 근로자에게 필요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.

## 8. 근로시간

- ① 주중 근무 시간은 시간 외를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되며, 근로자는 긴급 또는 예상 밖의 상황을 제외하고 최소 7일 중 1일을 휴무할 수 있다.
- ② 협력업체는 근무 시간과 휴무일에 관한 모든 법률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- ③ 시간 외 근무는 모두 자발적이어야 한다.

## 9. 임금과 보상

- ① 회사는 모든 근로자가 법정 최저 임금 및 수당 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.
- ② 회사는 휴가를 비롯해 법정 공휴일 휴무를 제공해야 한다.
- ③ 회사는 시간 외 근무 근로자에게는 법정 할증 요율로 보상해야 한다.
- ④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급여 구조와 급여 기간을 알려주고, 시간 안에 정확한 임금을 지불해야 한다.
- ⑤ 회사는 징계 조치로서의 임금 삭감을 사용해서는 안된다.

## 10. 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

- 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회사는 근로자들이 서로 결사하여 원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참가 또는 참가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간섭, 차별, 보복 또는 가혹 행위 없이 단체로 교섭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.
- ② 회사는 근로자들이 불만을 신고하거나, 임원진과 근로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.

## 11. 고충 신고 시스템

회사는 근로자들이 불만을 신고하거나, 임원진과 근로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가능한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.

## II. 보건 안전(Health & Safety)

회사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고, 건전한 보건 및 안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 근로자에게는 위험한 작업을 거부하고, 불건전한 작업 환경을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어야 합니다.

### 1. 작업장의 보건 및 안전 유지와 위해요소 차단

- ① 회사는 위해요소 제거, 엔지니어링 제어 또는 관리 제어 등의 공정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작업장의 보건과 안전 위해요소를 식별,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.
- ② 회사는 작업과 관련하여 유지보수 상태가 양호한 개인 보호 장비와 정상적 사용 지침을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.

### 2. 긴급 상황 예방/대비/대응

- ① 회사는 잠재적 긴급 상황을 식별 및 평가해야 한다.
- ② 각 상황에 대비해 회사는 긴급 계획 및 대응 절차를 수립 및 이행하여 인체 및 동식물과 환경, 그리고 토지에 끼치는 해를 최소화해야 한다.

### 3. 사고 관리

- ① 회사는 근로자가 보건 안전 사고 또는 위기 상황을 보고할 수 있는 제도와 이러한 보고를 조사, 추적 및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.
- ②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정 조치 계획을 이행하고, 필요한 치료를 제공하여 근로자의 업무 복귀를 지원해야 한다.

#### 4. 인체 공학

- ① 회사는 과도한 하중, 부적절하게 들어 올리는 자세 또는 반복 작업 등 인체공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는 작업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을 식별, 평가 및 관리해야 한다.
- ② 생산라인, 장비, 도구 및 작업대를 새로 도입하거나 변경하여 그 적격성을 판단할 때는 이러한 작업 공정까지 고려해야 한다.

#### 5. 작업 및 생활 조건

- ① 회사는 언제든 이용할 수 있는 청결한 화장실과 음용수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.
- ② 회사가 제공하는 식사, 취사 및 보관 시설은 위생적이어야 한다. 회사 또는 제3자가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는 청결하고 안전하며, 그 생활 공간 역시 타당해야 한다.

#### 6. 보건 안전 정보 공개

- ① 회사는 작업장 보건 안전 교육을 근로자에게 제1언어로 제공해야 한다.
- ② 보건 안전 정보는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설비에 게시해야 한다.

#### 7. 산업안전보건위원회

회사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창설 및 지원하여 진행 중인 보건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작업장 보건 안전 문제에 대한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.

### III. 환경(Environment)

회사는 환경적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법규를 준수하고 지속적으로 업무 개발, 이행 및 유지에 힘써야 합니다.

#### 1. 유해물질 관리 및 제한

- ① 회사는 유해물질을 식별, 관리, 저감 및 올바른 폐기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.

② 회사는 거래처에 제공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 고객사의 규제물질 사양을 준수해야 한다.

## 2. 비유해 폐기물 관리

① 회사는 비유해 폐기물을 식별, 관리, 저감 및 올바른 폐기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.

## 3. 폐수 관리

① 회사는 설비 가동시 발생하는 폐수의 식별, 관리 및 저감을 위한 체계적인 접근방식을 이행해야 한다.

② 회사는 폐수 처리 장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.

## 4. 우수관리

① 회사는 우수 유출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이행해야 한다.

② 회사는 불법 배출물 및 유출물이 우수 배수관, 공설 급수 또는 공공 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.

## 5. 배기가스 관리

① 회사는 대기 유해물질의 원인이 되는 작업으로 인해 배출되는 배기가스를 관리 및 저감하여 성실하게 제어해야 한다.

② 회사는 배기가스 제어 장치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.

③ 회사는 정기적으로 목표를 정량화하여 설정한 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환경 보존, 청정에너지 사용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량을 저감해야 한다.

## 6. 경계 소음 관리

회사는 설비 소음을 구분, 제어 및 모니터링하여 경계 소음 레벨에 영향을 미치는 소음을 최소화해야 한다.

## 7. 환경 허가서와 보고

- ① 회사는 필요한 환경 허가서를 취득하여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.
- ② 회사는 관련 허가서 및 규정의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.

## 8. 자원 소비 관리

회사는 정기적으로 화석 연료, 물, 유해 물질 및 천연 자원 소비 수량화, 목표 설정, 성과 모니터링, 저감, 보존, 재사용, 재활용, 대체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## IV. 윤리(Ethics)

회사의 모든 경영활동은 현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.

### 1. 기업의 성실성

- ① 회사는 부패, 착취, 횡령 또는 뇌물 등으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해서는 안된다.
- ② 해외부패방지법(FCPA)이나 관련 국제부패방지협약을 포함해 국내 적용되는 모든 부패 방지를 준수해야 한다.

### 2. 정보 공개

회사는 경영 활동, 지배구조, 재무상태, 노무, 안전 보건 및 환경 관리 실태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기록하고 해당 정보를 관련 법규 및 일반적인 산업계 관행에 따라 허위나 위조 없이 공개해야 한다.

### 3. 지적 재산권 보호

- ① 회사는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고객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.
- ② 기술이나 노하우 역시 지적재산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.

#### 4. 내부신고자 보호 및 익명의 제보자보호

회사는 관리자나 근로자가 작업장 불만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. 또한 내부고발자 비밀을 보호하고, 보복을 금지해야 한다.

#### 5. 지역사회 공헌

회사는 사회 및 경제적 개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동참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한다.

#### 6. 책임 있는 광물 조달

회사는 각자의 공급망 내에서 관련 재료에 대해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 회사는 관련 위험성을 확인하고 이를 완화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특정 상당한 주의 의무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. 분쟁, 죄악의 아동 노동 착취, 강제 노동 및 인신매매 또는 만연한 성폭력과 같은 대규모 인권 침해와 연관된 지역이나 건강 및 안전상의 심각한 위험 요소가 있거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기타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고위험 활동과 연관된 지역 등 이러한 고위험 지역에서 관련 재료가 조달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재료 가공 단계에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.

### V. 경영시스템(Management System)

회사는 본 규범 뿐 아니라 관련 법률 및 규정, 고객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인권 및 노동 관행, 안전보건, 환경, 윤리를 기업 경영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통합하는 경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. 여기에는 명확한 목적 및 목표, 정기적인 측정 및 성과 평가, 그리고 지속적 개선 수행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## 1. 준수의지 표명

회사는 경영진이 승인한 기업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표명하는 기업의 사회적, 환경적 책임 성명서를 전 작업장에 현지 언어로 게시해야 한다.

## 2. 경영진 책임과 의무

경영진은 경영시스템과 규범 관련 프로그램 이행 및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책임자를 선정해야 한다. 또, 정기적으로 경영시스템 현황을 검토해야 한다.

## 3. 법규 및 고객 요구사항 대응

본 규범의 요구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, 규정 및 고객 요구 사항을 파악하고, 이를 모니터링하여 경영 절차 내 반영을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.

## 4. 리스크 관리

회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노동 인권, 안전 보건, 환경, 윤리적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개발 및 유지하면서 각 위험군의 상대적 중요성을 파악하고, 식별된 위험군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절차와 관리를 이행해야 한다.

## 5. 개선 목표 수립

사회, 환경적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성과 목표 및 실행 계획을 문서화해야 하며, 해당 문서에는 목표 대비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.

## 6. 교육

회사는 정책, 절차, 개선 목표를 이행하고 해당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도록 관리자와 근로자를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, 운영해야 합니다.

## 7. 의사 소통

회사는 정책, 관행, 기대사항 및 성과와 관련된 분명하고 정확한 정보에 대해 근로자, 고객 및 협력회사와 소통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.

## 8. 임직원 피드백, 참여 및 고충처리

본 규범에서 다루는 조건에 대한 임직원의 의견을 취합하여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.

## 9. 감사와 평가

회사는 거래하는 1차 협력회사 및 그 하위의 협력회사들이 사회적 / 환경적 책임과 관련된 법규 요구사항, 본 규범의 내용 및 거래계약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.

## 10. 시정조치 프로세스

내부 또는 외부평가, 검사, 조사 및 검토에 의해 확인된 미비점을 적절한 시간 내에 시정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.

## 11. 문서와 기록

기업 운영 상 보관되는 문서 및 기록의 작성, 유지는 외부 공시와 관련된 규제를 준수하고, 회사 및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기밀 관리 요건의 적합성에 부합해야 한다.

## 12. 공급망 참여 및 책임 이행

회사는 자사와 관련 있는 공급업체, 계약자 등과 본 규범에서 지향하는 책임있는 기업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수립하고 관련 업체가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과 업체의 책임 이행을 감독하는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. 여기에는 이행 책임을 충실히 지키지 않는 업체와의 거래 중단까지도 포함한다.

## 내용 변경 이력

Ver.	내용
1.0	2023년 4월 제정